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위원장

제743호 2010. 2. 12.(금)

차 례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17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공고 ---- 3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174호 인천광역시 서구 푸른희망 서구의제21
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5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175호 담배소매인 폐업 및 소매인 신청 공고 ---- 1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179호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2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183호 201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획 공고- 14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184호 담배소매인 폐업 및 소매인 신청 공고 ---- 16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187호 담배소매인 폐업 및 소매인 신청 공고 ---- 17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190호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 18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기획홍보실 [032-560-4140]

뒷면 계속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191호 인천도시관리계획(연희1·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열람 공고 ----- 19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197호 쓰레기종량제봉투 상업광고 모집공고 ----- 2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199호 신조 공인 공고 ----- 24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17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시설(도로명:중로1류74호선, 소로3류20호선 사업명:석남동 중1-74호선 도로개설공사, 고현초교 진입로 개설공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 합니다.

2010. 2.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도로명:중로1류74호선, 사업명:석남동 중1-74호선 도로개설공사】

1.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49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 칭 : 중로 1류 74호선
3. 사업시행 면적·규모
 - 면 적 : 10,931m²
 - 규 모
 - L=557.3m, B=20m
4. 사업시행자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44
 - 성 명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5. 사업기간 : 2005. 3. ~ 2008. 12. 30.

【도로명:소로3류20호선, 사업명:고현초교 진입로 개설공사】

1.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7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 칭 : 소로 3류 20호선

3. 사업시행 면적·규모
 - 면 적 : 2,657m²
 - 규 모
 - L=293m, B=8m

4. 사업시행자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44
 - 성 명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5. 사업기간 : 2007. 8. ~ 2009. 12. 31. 끝.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174호

인천광역시 서구 푸른희망 서구의제21 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푸른희망 서구의제21 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02. 0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푸른희망서구의제21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의 설립목적에 적합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그간 나타난 실천협의회 관련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 임명 사무국장 임명에 관한 건 등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상임공동대표 선출 : 공동대표 중 호선 → 서구청장
- 기업대표 및 주민대표 선출 : 총회에서 선출 → 상임공동대표 추천에 의해 총회에서 인준
- 운영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 및 간사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장은 공동대표 2인의 추천을 받아 상임공동대표가 임명한다
 - 간사는 사무국의 사무국장이 겸직한다
- 사무국
 -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 사무국장은 공동대표 2인의 추천을 받아 서구청장이 임명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2월 1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560-4042, 팩스 560-4049)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푸른희망 서구의제21 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푸른희망 서구의제21 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중 “기업대표,주민대표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상임공동대표는 공동대표 중에서 호선한다” 를 “ 상임공동대표는 서구청장으로 하며기업대표,주민대표는 상임공동대표의 추천에 의해 총회에서 인준한다”로 한다

제6조 “제4조제3항의 규정은 의장단의 임기에 준용한다”를 “제4조제4항의 규정은 의장단의 임기에 준용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공무원 서구의회의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의장단, 분과위원장, 학계, 종교계, 기업 등을 대표하는 자로서, 상임공동대표가 위촉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공동대표 2인의 추천을 받아 상임공동대표가 임명한다

④ 간사는 사무국의 사무국장이 겸직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총회 안건으로 부의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사전 심의
3.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총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긴급 처리가 요구되는 사항
5. 기타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1조(사무국) ③ “협회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를
“ 협회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장은 공동대표
2인의 추천을 받아 서구청장이 임명한다로 한다

제12조(회의) ③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3분의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때 이를 소집한다를 “회의개최는 분기 1회를 원칙
으로 하되,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3분의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때 이를 소집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제4조 (생략)	제1조~제4조 (현행과 같음)
제5조(협회회의 기구와 임원)①~③ (생략) ④기업대표,주민대표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상임공동대표는 공동대표 중에서 호선한다. ⑤ (생략)	제5조(협회회의 기구와 임원)①~③ (현행과 같음) ④상임공동대표는 서구청장으로 하며, 기업대표,주민대표는 상임공동대표의 추천에 의해 총회에서 인준한다.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의장단의 임기) 제4조 제3항의 규정은 의장단의 임기에 준용한다.	제6조(의장단의 임기) 제4조 제④항의 -----.
제7조~제8조 (생략)	제7조~제8조 (현행과 같음)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①(생략) ②운영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구의원, 공무원 등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간사는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①(현행과 같음) ②운영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공무원, 서구의회의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의장단, 분과위원장, 학계, 종교계 기업 등을 대표하는 자로서, 상임공동대표가 위촉 구성한다 ③운영위원장은 공동대표 2인의 추천을 받아 상임공동대표가 임명한다 ④간사는 사무국의 사무국장이 겸직한다
<신설>	③운영위원장은 공동대표 2인의 추천을 받아 상임공동대표가 임명한다
<신설>	④간사는 사무국의 사무국장이 겸직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③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p>1.총회에서 위임된 사항</p> <p>2.총회 안건으로 부의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사전심의</p> <p>3.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p> <p>4.총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긴급처리가 요구되는 사항</p> <p>5.기타 공동대표 및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p>	<p>⑤----- -----</p> <p>1.-----</p> <p>2.----- -----</p> <p>3.-----</p> <p>4.-----</p> <p>5.----- -----</p>
제10조~제10조의1(생략)	제10조~제10조의1(현행과 같음)
<p>제11조(사무국) ①협의회 사무실은 구청 사내에 두며, 협의회 업무 지원을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p>	<p>제11조(사무국) ①----- -----, --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장은 공동대표 2인의 추천을 받아 서구청장이 임명한다</p>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p>제12조(회의) ①~② (생략)</p> <p>③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운영위원장이 주재하며,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p>	<p>제12조(회의)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회의개최는 분기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p>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제19조(생략)	제13조~제19조(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175호

담배소매인 폐업 및 소매인 신청 공고

1.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담배사업법 폐업사항에 대하여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며.

상호	소재지	성명	구분	폐업일
인더라인25시	인천 서구 석남동532 금호어울림상가1/107	전혜숙	일반	2010.02.05

2. 이에 따른 인근지역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받고자,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소매인을 지정하고자 하오니 **아래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 2010.02. 05 - 2010. 02. 12

나. 접수 및 문의처 : 서구청 지역경제과 (☎560-4434)

다. 접수서류

- 1)소매인지정신청서
- 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3)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4)건물등기부등본사본 1부
- 5)우선지정 자격증명 서류(장애인, 국가유공자 증명서류)1부.
- 동일 주민등록표상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라. 참고사항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6항)

- 1)신청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 2)신청자 중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있을 경우 우선지정
- 3)우선지정신청자가 2인 이상의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2010. 02.05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179호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있어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 2. 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검단2 및 당하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준공이임박함에 따라 시행청으로부터 법정동 경계조정 협의가 있으며
- 현행 법정동 경계 존치시 1개의 필지내 2개 이상의 법정동이 혼재 주민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법정동 경계조정

2. 주요내용

- 별표 중 법정동 관할구역 변경
 - 검단2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별표 중 마전동, 왕길동, 당하동, 불로동란 관할구역 변경
 - 당하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별표 중 마전동, 당하동, 백석동란 관할구역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0.2.2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참조 : 총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323번지/☎032-560-4512/Fax032-560-4099】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안)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 - 183호

201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획 공고

인천광역시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02 . 09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지원규모 : 총 50억원 범위내

2. 지원대상 :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인천광역시 서구에 소재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제조업(제조업 전업율 30%이상)
-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및 제조업관련 지식기반서비스업
- 시내버스운송업, 자동차정비업(1종, 2종), 택시운송업
-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등

3. 용자조건 및 한도

- 용자한도액 : 업체당 2억원 이내(최소 1천만원 이상)
- 이차차액보전 : 3%(구 부담)
- 용자기간 : 3년(1년거치 2년간 4회 균등분할상환)
- 대출금리 : 시중 자율금리 (고정 및 변동 기업체 자율선택)
 - ※ 단, 무분별한 금리인상 방지를 위한 최대 금리 상한선 적용 : 10 %이내(금융기관 일률적용)
- 대출유효기간 : 지원결정 통보일로 부터 3개월 이내
- 취급예정은행 : 중소기업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농협중앙회

4. 지원제외 대상

- 시(市) 경영안정자금 또는 구(區)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중인 업체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휴·폐업중인 업체
-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인 업체이거나 무등록 공장(제조업체에 한함)
- 세금을 체납중인 업체
 - ※ 금회 지원 업체는 대출 시점 부터 향후 3년간 지원 제외.

5. 지원결정 취소 대상

- 지원결정 후 휴·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6.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0. 2. 10 ~ 자금 소진시까지
- 접수처 : 인천광역시서구 지역경제과 ☎(032)560-4442(별관 3층)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심곡동 244)

7. 신청 구비서류

- 공통서류 : 미제출시 접수불가

구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지원 신청서 1부(별첨서식 1)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금 사용계획서 1부(별첨서식 2)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원본 1부(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 ※ 개인사업자일 경우 반드시 일반재무제표 발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국세납입증명서 1부
	행정정보이용 동의서 1부(별첨서식 3)

- 해당업종별 증명서류(해당시 제출) : 미제출시 접수불가

구분	제출서류
자동차정비업 (종합, 소형)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 (1종, 2종) 등록증
시내버스운송업, 택시운송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택시운송사업 등록증
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증
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소방공사업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업 등록증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업	해당 등록증 및 허가증 [안내문 붙임2 참조]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바람

8. 기타사항

- 동 자금은 취급은행에서 담보(부동산, 보증, 신용보증서 등)를 요구하게 되오니 신청전에 거래은행 등과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지역경제과(☎560-44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인천광역시 서구 홈페이지 (<http://www.seo.incheon.kr>)내 고시/공고란 또는 지역경제과 부서새소식
- * 자금 지원신청 관련 서식은 인천광역시 서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지역경제과 부서새소식란에서 다운로드 가능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184호

담배소매인 폐업 및 소매인 신청 공고

1.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담배사업법 폐업사항에 대하여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며.

상호	소재지	성명	구분	폐업일
검암타운	인천 서구 검암동 502-2	정일섭	일반	2010.02.08

2. 이에 따른 인근지역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받고자,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소매인을 지정하고자 하오니 **아래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 2010.02. 08 - 2010. 02. 17

나. 접수 및 문의처 : 서구청 지역경제과 (☎560-4434)

다. 접수서류

- 1)소매인지정신청서
- 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3)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4)건물등기부등본사본 1부
- 5)우선지정 자격증명 서류(장애인, 국가유공자 증명서류)1부.
- 동일 주민등록표상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라. 참고사항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6항)

- 1)신청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 2)신청자 중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있을 경우 우선지정
- 3)우선지정신청자가 2인 이상의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2010. 02.08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187호

담배소매인 폐업 및 소매인 신청 공고

1.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담배사업법 폐업사항에 대하여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며.

상호	소재지	성명	구분	폐업일
용성종합슈퍼	인천 서구 가정동 194-17	김수이	일반	2010.02.09

2. 이에 따른 인근지역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받고자,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소매인을 지정하고자 하오니 **아래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 2010.02. 09 - 2010. 02. 18

나. 접수 및 문의처 : 서구청 지역경제과 (☎560-4434)

다. 접수서류

- 1)소매인지정신청서
 - 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3)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4)건물등기부등본사본 1부
 - 5)우선지정 자격증명 서류(장애인, 국가유공자 증명서류)1부.
 - 동일 주민등록표상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 라. 참고사항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6항)
- 1)신청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 2)신청자 중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있을 경우 우선지정
 - 3)우선지정신청자가 2인 이상의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2010. 02.09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190호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경인 아라뱃길 접근항로 개설 및 항만부지 호안 조성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2. 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개요

- 가. 사업명 : 경인 아라뱃길 접근항로개설 및 항만부지 호안 조성사업
- 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경서동 545번지 지선 공유수면 일원
- 다. 면적 : 접근항로 3,120,000㎡, 준설토투기장(항만부지) 828,000㎡
- 라. 사업기간 : 2010 ~ 2011
- 마. 시행자 : 인천항만공사

2. 공람기간 및 장소

- 가. 공람기간 : 2010년 2월 11일 ~ 2010년 3월 8일
- 나. 공람장소 : 인천 서구청 환경보전과 검암·경서동주민센터 인천항만공사

3. 설명회 개최

- 가. 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소공연장(2층)
- 나. 일시 : 2010년 2월 19일 (금) 오전 10:30

4. 의견제출(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및 공청회 개최여부)

- 가. 제출기간 :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공람기간이 끝난 후7일 이내
- 나. 제출장소 : 공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공람장소에 제출
- 다. 제출내용 :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예상되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영향과 관련된 의견 (공청회 개최여부 포함)

- 5. 기타 문의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환경보전과 (☎ 560-4353)
인천항만공사 (☎ 890-8257)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191호

인천도시관리계획(연희1·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열람 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연희1·2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열람공고 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2.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 공고 내용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연희1·2지구 지구단위계획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연희1주차장	노외주차장	서구 심곡동 239-9번지	3,141.6	-	3,141.6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에 관한 도시계획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계획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치(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기정	주차장1	주차장1 (주차장 G용도)	용도	지정용도	○ 별표1의 G 지정용도
				권장용도	-
				불허용도	○ 별표1의 G 불허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5층 이하	
			형태	○ 별표2의 G	
			배치	○ 별표3의 G	
			색채	○ 별표4의 G	
			건축선	건축한계선 2m	
변경	주차장1	주차장1 (주차장 G용도)	용도	지정용도	○ 별표1의 G 지정용도
				권장용도	-
				불허용도	○ 별표1의 G 불허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5층 이하	
			형태	○ 별표2의 G	
			배치	○ 별표3의 G	
			색채	○ 별표4의 G	
			건축선	건축한계선 2m	

-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계획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2. 도 면 : “생략”

3.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197호

쓰레기종량제봉투 상업광고 모집공고

1. 광고게재대상 및 매수 : 총 1,500,000매

▷ 총 3종 【 10ℓ, 20ℓ, 50ℓ 】 쓰레기종량제 봉투

2. 광고모집 입찰참가신청

가. 기 간 : 2010. 2. 11. ~ 2010. 3. 12.(09:00~18:00) 【공휴일제외】

나. 장 소 : 서구청 청소행정과(본관 3층)

다. 신청자격 : 서구 관내의 개인(법인)사업체로서 광고 희망업체

(예시) 관내 기업체, 금융기관, 병·의원, 약국, 음식점, 제과업, 이·미용업,

세탁업, 목욕업, 학원, 유치원, 부동산, 자동차 정비업 등

※ 단, 사회적 미풍양속을 해치고, 사회통념상 행정기관에서 광고를 게재

하기에 부적합 업체는 제외

라. 신청서류 : 쓰레기봉투 상업광고 입찰참가신청서 1부

3. 광고모집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가. 일 시 : 2010. 3. 15(월) 14:00

나. 장 소 : 서구청 3층 소회의실

다. 참가자격 :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개인(법인)사업체

4. 업체선정방법 : 공개경쟁입찰

가. 참여업체가 9개업체 이상 다수일 경우에는 최고가 입찰금액순으로 8개 업체를 선정하되, 업체별 입찰금액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참여업체가 2개업체 미만일 경우 유찰로 간주함

나. 동가(同價)입찰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업체 결정

다. 낙찰업체가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후순위 업체(1개업체)선정

5. 광고게재 방법

가. 광고는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뒷면의 여백에 게재함

나. 광고게재는 업체별 1건으로 하되, 광고 크기 내에 글자 및 숫자 등 문구는 업체에서 자율결정하고 광고문구의 색은 1도(청색 또는 녹색)로 함

다. 낙찰업체에서 희망하는 광고문구가 광고효과 및 다른 광고문구와 어울

리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구청·낙찰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조정이 안 될 경우 낙찰 취소함)

라. 계약시 체결된 광고문구는 절대 변경할 수 없음

마. 게재순서는 광고금액이 높은 순으로 쓰레기봉투 뒷면 하단부의 상단→하단순으로 배열하되 동일 열列)에서는 좌측→우측으로 배열함
(광고게재 위치와 순서는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

바. 동가(同價)낙찰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배열순위 결정함

6.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가. 낙찰업체는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에 낙찰금액(광고금액)을 우리구 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나 낙찰금액의 1/2금액을 2회 분납(1회분은 계약 후 3일 이내, 2회분은 3개월 이내)도 가능하며, 분납시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또한 낙찰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취소되며, 후 순위 업체를 낙찰업체로 결정할 수 있음

7. 기타 사항

가. 광고가 게재되는 쓰레기봉투는 판매량을 감안하여 2010년도말까지 분할하여 제작하며, 미제작 잔량은 2011년 이월제작함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청소행정과(☎032-560-439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1 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199호

신조 공인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조한 공인의 인영을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 2. 11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공인신조 사유
 - 주민등록 발급민원 증대(석남ㄴ1동)
2. 공인의 사용 예정일 : 2010년 2월 22일
3. 신조공인 인영

“별첨 참조”

신조공인 인영

연번	신조공인명	규격	인영
1	석남1동장인/민원전용(인증기)	2.1cm ² X 2.1cm ²	